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9. 8.
행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8.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8. 24.

다. 상정일자: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2026. 9.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이학용】

가. 제안이유

-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무료 개방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설·추석 연휴 기간 구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명절 연휴 기간 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참고사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입법예고 : 2026. 7. 16. ~ 2026. 8. 5.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설·추석 명절 연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포구 청사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절 기간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②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제1항
 -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안 제3조제1항제1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제1항제2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제1항제3호
 - 설·추석 연휴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③ 법적 타당성 검토

- 본 개정안은 설·추석 명절 기간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평상시 활용도가 낮은 공공청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④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명절 기간에는 가족·친지 방문 등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청사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주차난 완화와 주민 편의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⑤ 검토 및 유의사항

-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개방 여부를 구청장의 판단에 폭넓게 맡기는 규정인 만큼,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료개방의 대상·기간·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무료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주차,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및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비하여 개방시간,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및 관리인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⑥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추석 명절 등에 청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무료개방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개방 기준과 이용방법,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11.]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4. 30.,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2026. 4. 30.>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